교원연구실적평가기준 운영지침

2023. 7. 24. 제정 2024. 8. 29. 개정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교원기간제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」, 「신임교원임용규정」 및 「중점교원인사규정」에서 정한 교원연구실적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연구실적 중복) ① 동일한 내용의 연구실적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.
 - ② 부분(또는 일부) 중복의 경우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중복의 정도에 따라 일부를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- ③ 기타 특수한 경우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- 제3조(증빙서류 제출) 업적 승인 등의 판단을 위하여 업적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제4조(연구실적 평가기준) ① 논문의 연구실적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IF(Impact Factor) 및 전공 저널 분야별 순위 백분율 적용 방법 등은 다음 각목과 같다. 가. 학술지 종류별 저널 검증(확인) 및 확인 사이트

학술지구분	저널 검증(확인) 및 F 확인	인터넷 주소
SCIE, SSCI, A&HCI	Journal Citation Reports(JCR)	https://jcr.clarivate.com/
SCOPUS	Journal Metrics SCOPUS	https://journalmetrics.scopus.com/
KCI	한국학술지인용색인(KCI)	https://www.kci.go.kr/

- 나. IF 상위 백분율은 상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카테고리 중에서 해당 학술지의 순위 백분율을 의미한다.
- 다. Journal Citation Reports(JCR)의 'Rank by Journal Impact Factor(JIF)'에서 해당 카테고리 의전체 저널 수에서 몇 등을 하는지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.
- 라. 'Rank by Journal Citation Indicator(JCI)'는 Impact Factor가 아니며, JCR에서 제공되더라도 SCIE, SSCI, A&HCI 학술지가 아닐 수 있다.
- 마. IF는 논문이 게재된 시점의 가장 최근 IF를 적용하며, 카테고리가 다수일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값을 적용한다. 다만, '논문이 게재된 시점으로부터 이전 IF'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IF가 아직 부여되지 아니하여 상기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생 저널의 경우 IF=Q4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.
- 3. 연구실적은 학술지의 권, 호 및 페이지가 부여된 오프라인 출판일을 기준으로 인정한다. 단, 온라 인으로 먼저 발행된 경우 온라인 출판일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오프라인 출판과 중복인 정 하지 않는다.
- 4. SCOPUS 정규논문 인정기준은 한국연구재단 기준에 따른다. (Article, Review 형식 등만 인정하고

Article in Press, Conference Paper, Conference Review, Editorial, Letter, Note, Short-survey는 불인정한다.)

- 5. 국내저명학술지, 국제저명학술지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그 지위가 유지된 기간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국내저명학술지, 국제저명학술지 업적으로 인정한다.
- ② 단행본의 연구실적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문학창작 단행본은 소설, 시, 희곡의 단독 창작단행본으로 최초 발표의 200쪽 이상 분량의 출판 물(자가출판 제외)을 말하며, 전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를 결정한다.
 - 2. 저서는 기존의 논문이나 저술로 발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연구가 50% 이상을 넘는 새로운 저술 로서 연구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사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.
 - 3. 단행본 모든 업적은 ISBN 번호가 있는 출판본을 기준으로 배점하며, 개인 출력본이나 개인 제본 판은 인정하지 않는다.
 - 4. 단행본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에게 공개된 출판저작물(국제도서표준 ISBN)이 있는 서적 등이며 동일 제목의 단행본은 배출 권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저작물로 간주한다.
 - 5. 단행본 책임저자일 경우 출판사에서 책임저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책임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.
 - 6. 단행본의 경우 개정판(기존 출판본의 내용을 개정한 것)이나 단순한 교정, 증보판 또는 재판은 인정하지 않는다.
 - 7. 저서는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저작, 발행한 단행본만 인정하며, 전공분야 관련 여부는 연구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 - 8. 저서는 전공분야의 이론, 학설을 정립하여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학술 저서나 창작집으로서 반드 시 ISBN이 있어야 하며, 개인 논문 모음집 형태는 인정하지 않는다. 저서의 전공분야 관련 여부, 학술적 가치 및 창작집 여부는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 - 9. 문학창작은 문학전공자의 경우에만 해당하며, 창작은 초판에 한하여 인정한다. 다만, 기존에 발표된 작품 모음집 또는 연재물의 출간 등은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 - 10. 번역서의 경우 교수 개인의 전공분야와 관련한 번역물만 인정하며, 전공분야 관련 여부는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 - 11. 번역서는 발행일 30일전까지 번역승인신청서를 산학연구과에 접수하고, 승인받은 원서번역에 한한다. 번역서의 인정 여부는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.<신설 2024.8.29.>
 - 12. 소품번역은 시, 단편소설, 희곡 등 짧은 작품의 번역이나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미하며, 단 3쪽 이하의 분량은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소품번역의 인정 여부는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.<개정 2024.8.29.>
 - 13. 여러 사람의 논문 및 문학 창작물을 묶어 편집한 편저서의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.<개정 2024.8.29.>
- ③ 학술발표의 연구실적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학술대회 발표를 증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본 및 Proceeding에 게재된 내역이 있어야 인정한다.
 - 2. 학술대회 발표 프로그램에 등재되었거나 초록집에 수록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.
 - 3. Computer Science(CS) 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한 최근 학술 대회가 아닌 경우에는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- ④ 예술대 실기의 연구실적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국내 국공립 미술관에서의 개인전 및 공인된 전문 전시장에서의 개인전 업적의 미술관(전시장) 목록은 Art&Design 대학(의상디자인전공 포함)에서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명시하고, 교

- 원연구실적 미술관(전시장) 목록에 해당하는 미술관(전시장)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경우 한하여 심사면제로 처리한다.
- 2. 단, Art&Design 대학(의상디자인전공 포함)에서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명시하는 교원연구실적 미술관(전시장) 목록에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, 그 지위가 유지된 기간에 전시된 개인전에 한하여 심사면제 처리하여 업적으로 인정한다.
- ⑤ 산학협력의 연구실적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현장실습 기관 협약은 현장실습 주무부서에서 주관하고 승인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협약,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협약, 인턴십(일경험) 프로그램 실습(연수)기관 협약 실적을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. 다만, 「고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약 사법」,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등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전공 수업의 일부로 진행되는 유아교육과, 약학과 등의 전공(학과) 현장실습에 대한 기관 협약은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<신설 2024.8.29.>
 - 2. 현장실습학기제 또는 인턴십(일경험) 프로그램 현장 지도 는 주무부서에서 주관하고 승인된 실습(연수)기관 방문 및 지도·점검 실적에 한하여 방문지도 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>
 - 3. 캡스톤디자인 운영은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인정요건을 충족한 학점인정 교과목에 한하며, 학점 이 부여된 교과목에 대해 심사면제 처리하여 업적으로 인정한다. 다만, 계절학기 교과목은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<신설 2024.8.29.>
 - 4. 산학협력 재직자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은 기업에서 대학에 위탁한 재직자 교육, 가족 기업 및 성인학습자 대상 재직자 위탁교육을 대상으로 한다.<신설 2024.8.29.>
 - 5. 산학협력 재직자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 실적은 산학협력협의체 사업계획서(신규 또는 계속 운영)에 포함되어 개발 및 구축된 실적에 한하며, 개발 및 구축에 대한 결과보고서 등 증빙 자료를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 - 6. 산학관련 프로그램 운영은 산학연(관) 협력 프로그램, 지역사회 연계 산학협력 프로그램, 산학협력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등 주무부서에서 승인되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건을 대상으로, 산학협력협의체 사업계획서(신규 또는 계속 운영)에 포함되어 운영된 실적에 한하며,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. 다만, 산학협력중점교원에 대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업적 인정 기준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 - 7. 진로탐색학점제 지도는 주무부서에서 주관하고 승인된 진로탐색학점제 지도 실적을 연구관리위 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 - 8. 산학협력협의체 운영은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협동 교육과정(교과·비교과) 설계 및 개편, 공동연구 및 취·창업활동, 인턴십 및 현장실습 등의 학기별 활동을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 - 9. 산학협력협의체 운영 중 신규 운영 협의체는 차년도 교과과정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 설계가 포함되어야 하며, 계속 운영 협의체는 교과과정 개편 운영, 캡스톤디자인, 인턴십 및 현장실습, 산학공동연구, 취·창업 활동 등 산학협력협의체 운영 기준에 따른 1건 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한다.<신설 2024.8.29.>
 - 10. 산학협력협의체 실습(연수)기관 현장지도는 산학협력협의체 사업계획서(신규 또는 계속 운영)에 포함되어 시행된 실습(연수)기관 방문 및 지도·점검에 대한 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 - 11. 취업매칭은 국가 및 민간 인력양성사업 추진 결과를 기반으로 발생한 취업 인원을 대상으로

하며, 인력양성사업 추진 보고서 및 학생 취업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하며, 재임용, 승진, 교수업적평가 시평가기간 내최대 0.5점까지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
- 12. 학생창업 지도는 주무부서에서 학생창업을 승인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, 창업상담일지, 사업자 등록증, 창업아이템, 매출액 등의 증빙자료를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- 13. 창업동아리 지도는 주무부서에서 주관하고 승인된 창업동아리 지도 실적을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- 14. 창업 교육은 주무부서에 등록되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창업 교육에 대해 교육계획서 및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- 15. 특허, 디자인(의장), 실용신안 등록은 대학 및 산학협력단 소유만 인정하며, 국가에서 발행한 등록증, 실용신안 등록증, 디자인(의장) 등록증 등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면제로 처리한다.<개정 2024.8.29.>
- 16. 특허, 디자인(의장), 실용신안 등록이 공동연구인 경우 책임연구자는 발명신고서 상 지분이 가장 높게 책정된 연구자로 판단한다. 그 외 특수한 상황은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.<개정 2024.8.29>
- 17. 특허, 디자인(의장), 실용신안은 최초 등록에 한하여 100% 점수를 부여하고, 최초 등록된 기술을 기반으로 추가되는 등록에 대해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추가로 10%만 점수를 부여한다.<신설 2024.8.29.>
- 18. 기술이전은 산학협력단에 권리승계 및 기술이전이 승인된 기술에 한하며, 기술이전료 점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입금액을 기준으로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>
- 19. 교원창업은 창업지원센터와 교원창업 협약을 체결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, 「창업규정」 제17 조(창업교원의 의무)의 의무사항을 이행한 교원의 사업자등록증, 과세표준증명서, 매출 관련 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- 20. 교원창업의 업적 점수는 「교외연구비수혜에 따른 연구실적 평가기준」을 적용하되, 최대 0.5 점까지 업적으로 인정한다. 단,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최대 2.0까지 업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>
- 21. 산학협업 기업 유치 중 창업인큐베이팅은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아이템을 구체 적인 창업 결과로 도출시킬 수 있는 기업 유치를 의미하며, 사업공간 제공, 사업자 등록 지원,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의 증빙자료를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- 22. 산학협업 기업 유치 중 ICC 기업 유치 및 운영은 주무부서 주관으로 특성화 분야로 지정된 분야의 공동연구과제 수행 기업 유치 및 공동연구 운영실적을 대상으로 하며, 공동연구수행 MOU 및 공동연구 결과보고서 등의 증빙자료를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- 23. 교외연구비수혜는 교외연구과제 수혜실적을 대상으로 「교외연구비수혜에 따른 연구실적평가 기준」 [별표1] 또는 [별표 1-1]에 따른 실적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면제로 처리한다.<신설 2024.8.29.>
- 24. 산학공동연구는 「교외연구비수혜에 따른 연구실적평가 기준」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업 및 기관 과의 공동연구를 대상으로, 산학협력협의체 사업계획서(신규 또는 계속 운영)에 포함되어 수행 된 실적에 한하며, 공동연구 결과물 등 증빙자료를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

한다. 다만, 산학협력중점교원에 대한 산학공동연구 업적 인정 기준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
- 25. 산학협력 기금 유치는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외부 기업 및 기관 등에서 기부받은 기금(현금 또는 현물) 유치 실적을 대상으로 기부증서 등의 증빙자료를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- 26. 공용장비활용실적은 외부에서 본교에 등재된 공용장비를 사용한 실적에 한하며, 산학협력단을 통해 증빙이 가능한 실적을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- 27. 신기술, 제품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한 신기술(NET) 및 신제품(NEP)에 대해 인증서를 제출한 실적을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- 28. 신기술, 제품인증이 공동소유인 경우 공동연구 인정비율을 적용한다. 그 외 특수한 상황은 연구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.<신설 2024.8.29.>
- 29. 기술·경영 자문은 우리대학 관련 또는 우리대학과 연계된 자문으로 기술, 경영, 법률 자문과 Art & Design대학 창작활동, 전시기획, 작품 자문을 포함한다.<신설 2024.8.29.>
- 30. 기술·경영 자문은 공식적으로 산학협력단에 의뢰하거나 또는 산학협력단이 의뢰한 자문에 한하며, 컨설팅 또는 자문 결과보고서 등의 증빙자료를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<신설 2024.8.29>
- 31. 가족회사 유치는 산학협력의 주요 대상이 되는 기업(기관)을 대상으로 하며, 가족회사 협약서 및 인증서 등의 증빙자료를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- 32. 산학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은 산학협력 추진사업에 대해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 작성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업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- 33. 산학사업 관련 센터 운영은 산학사업 관련 수탁운영센터의 운영 보고서 및 사업추진 결과보고 서, 운영책임자의 기여도를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- 34. 산학사업 관련 센터 운영 점수는 연간 사업비 1,000만원 당 0.1점으로 한다.<신설 2024.8.29.>
- 35. 산학 관련 대학사업, 정책과제 참여는 보고서 작성 등 총장이 부여하는 각종 정책과제 수행, 특성화 사업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- 36. 학교기업 운영은 학교기업 운영 기준(정규교과목 운영,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등) 및 매출액 발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매출 관련 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업 적으로 인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- 37. 학교기업 운영 기준은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「대학생 현 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등을 따른다.<신설 2024.8.29.>
- 38. 지역사회 지원은 지자체 및 지역기업(기관)과의 공유·협력 사업 실적을 대상으로, 산학협력협의 체 사업계획서(신규 또는 계속 운영)에 포함되어 수행된 실적에 한하며, 사업추진 MOU, 사업추진 결과물 등 증빙자료를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. 다만, 산학협력중점교원에 대한 지역사회지원 업적인정 기준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<신설 2024.8.29.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년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4. 8. 29.>

1. 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24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